

# 엘리프 원종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32-677-777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1.14.(금)	2025.11.24.(월)	2025.11.25.(화)	2025.11.26.(수)	2025.12.02.(화)	2025.12.08.(월)~ 2025.12.12.(금)	2025.12.15.(월)~ 2025.12.17.(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면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하였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엘리프원종.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조본상 밀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준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항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1.24.(월)	2025.11.25.(화)	2025.11.26.(수)	2025.12.02.(화)	2025.12.08.(월)~ 2025.12.12.(금)	2025.12.15.(월)~ 2025.12.17.(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프 원종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합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를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5.12.02.)로부터 1년

#### ■ 인지세 납부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혜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3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 14551호(2025.1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층 8개동 총 207세대[조합 109세대] 중 일반분양 98세대  
[특별공급 49세대(기관추천 7세대, 다자녀 10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550	01	059.9800C	59C	59.9800	15.7587	75.7387	52.2807	128.0194	30.6583	20	2	2	5	1	2	12	8	1
	02	059.9200C	59C1	59.9200	14.9073	74.8273	52.2284	127.0557	30.2894	11	1	2	2	-	1	6	5	2
	03	059.9600C	59C3	59.9600	14.9249	74.8849	52.2633	127.1482	30.3127	52	4	4	12	2	3	25	27	4
	04	072.2300B	72B	72.2300	18.4008	90.6308	62.9582	153.5891	36.6865	7	-	-	1	-	1	2	5	2
	05	074.8600B	74B1	74.8600	18.6515	93.5115	65.2506	158.7621	37.8525	8	-	2	1	-	1	4	4	1
합계										98	7	10	21	3	8	49	49	10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 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해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배정 세대 중 청약 미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C	59C1	59C3	72B	74B1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1	-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	1
	장애인(경기도)		-	1	1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1	-	1	-	-	2
	경기도 거주자(50%)		1	1	2	-	1	5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1	2	-	1	5
	신혼부부 특별공급		5	2	12	1	1	2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2	-	-	3
생애최초 특별공급			2	1	3	1	1	8
합계			12	6	25	2	4	49

※ 주택형별 특별 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800C	059.9200C	059.9600C	072.2300B	074.8600B
약식표기	59C	59C1	59C3	72B	74B1

###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총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증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차	2차 (계약 후 30일 이내)	2026.02.15	2026.06.15	2026.10.15	2027.02.15	2027.05.15	2027.08.15	
59C	2층	1	170,100,000	315,900,000	486,000,000	10,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3~4층	3	170,100,000	326,100,000	496,200,000	10,000,000	39,620,000	49,620,000	49,620,000	49,620,000	49,620,000	49,620,000	49,620,000	148,860,000
	5~7층	6	170,100,000	341,500,000	511,600,000	10,000,000	4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153,480,000
	8~10층	5	170,100,000	347,600,000	517,700,000	10,000,000	41,770,000	51,770,000	51,770,000	51,770,000	51,770,000	51,770,000	51,770,000	155,310,000
	11~14층	5	170,100,000	350,200,000	520,300,000	10,000,000	4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156,090,000
59C1	2층	2	167,650,000	311,350,000	479,000,000	10,000,000	3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3~4층	4	167,650,000	321,450,000	489,100,000	10,000,000	3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146,730,000
	5~7층	5	167,650,000	336,550,000	504,200,000	10,000,000	4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151,260,000
59C3	2층	4	164,465,000	305,435,000	469,900,000	10,000,000	36,990,000	46,990,000	46,990,000	46,990,000	46,990,000	46,990,000	46,990,000	140,970,000
	3~4층	8	164,465,000	315,335,000	479,800,000	10,000,000	3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143,940,000
	5~7층	12	164,465,000	330,135,000	494,600,000	10,000,000	39,460,000	49,460,000	49,460,000	49,460,000	49,460,000	49,460,000	49,460,000	148,380,000
	8~10층	12	164,465,000	336,135,000	500,600,000	10,000,000	4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50,060,000	150,180,000
	11~14층	16	164,465,000	338,535,000	503,000,000	10,000,000	4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50,900,000
72B	2층	2	203,175,000	377,325,000	580,500,000	10,000,000	4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174,150,000

	3~4층	4	203,175,000	389,525,000	592,700,000	10,000,000	49,270,000	59,270,000	59,270,000	59,270,000	59,270,000	59,270,000	59,270,000	177,810,000
	14층	1	203,175,000	418,325,000	621,500,000	10,000,000	5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186,450,000
74B1	2층	1	205,380,000	381,420,000	586,800,000	10,000,000	4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58,680,000	176,040,000
	3~4층	2	205,380,000	393,720,000	599,100,000	10,000,000	4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179,730,000
	5~7층	3	205,380,000	412,320,000	617,700,000	10,000,000	5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61,770,000	185,310,000
	8~9층	2	205,380,000	419,720,000	625,100,000	10,000,000	52,510,000	62,510,000	62,510,000	62,510,000	62,510,000	62,510,000	62,510,000	187,53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나이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 공간 등은 제외)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주거 전용+주거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 정리, 진입로(가감속 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 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인수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되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 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 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나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4

##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 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li>■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ul>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처리 방법</th></tr></thead><tbody><tr><td>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b>부적격 처리</b></td></tr><tr><td>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b>무효 처리</b>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td><td><b>모두 부적격 처리</b></td></tr></tbody></table>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b>부적격 처리</b>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b>무효 처리</b>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b>모두 부적격 처리</b>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b>부적격 처리</b>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b>무효 처리</b>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b>모두 부적격 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li></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ul></li></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ul></li><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ul></li></ul></li></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head><tbody><tr><td>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m<sup>2</sup>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m<sup>2</sup>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body></table>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음</p>																							

4-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구분	내용
----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4-2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li> </ul> </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4-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되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순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li> </ul>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li>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 기준)에 따른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li> </ul> </li> </ul>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0 2 4 6 8 10 12 14 16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18 20 22 24 26 28 30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1명 2명 3명	5 10 15 20	4명 5명 6명 이상	25 30 35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 2 3 4 5 6 7 8 9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10 11 12 13 14 15 16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 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 원에 해당하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 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 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 의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 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①소득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16 683 2151 107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 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 공급</td> <td>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td> <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td> </tr> <tr> <td></td> <td></td>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하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li> </ul>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ul>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하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하거나,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li> </ul> </li> <li>■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확인 시점</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316 1398 2151 1461">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2025.11.14.</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수령한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td><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통장 자격요건	구 분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li> </ul>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  |  |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 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 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른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

	<p>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 방법: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시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나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 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b>인감증명 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본인서명확인 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화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マイ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 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 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나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등록 방법 : 청약자격 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 구성원 동의</li> <li>- 이용 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p><b>청약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 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당첨조회</li> <li>- 조회 기간 : 2025.12.02.(화)~2025.12.11.(목) (10일간)</li> <li>- 조회 기간(10일)이 지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 제행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 내용 확인 가능</li> <li>- 현장 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 내용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용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용 조회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내용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p><b>문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일시 : 2025.12.02.(화)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li> </ul>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안내

구분	제출대상자	제출일시	서류 제출 장소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예비입주자 포함)	2025.12.08.(월) ~2025.12.12.(금) 10:00 ~ 16:00	■ 엘리프 원종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용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정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해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정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input type="radio"/>		신분증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 <li>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li> <li>제출처 : 원종공항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li> </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외)</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군복무 기간 명시)</li> </ul>
	<input type="radi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input type="radio"/>		기준 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및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자 중 기준 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li> <li>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ul> </li> </ul>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p> <p>※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p>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해외 체류기간 판단</li> </ul> <p>※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p>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li> </ul> <p>※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시 단신부임 인정,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인정 불가</p> <p>※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p>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청약홈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 제외, 공통서류 만 제출</li> </ul>
다자녀 가구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ul>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별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별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li> </ul>
	○		비사업자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성년자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li> </ul>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직인 날인 원본)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 양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li> </ul>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ul> <p>※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p>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p>「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li> </ul> <p>※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p>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ul> <p>※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p>
생애 최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p>「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ul> <p>※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p>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li> </ul>
	○	소득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li> </ul> <p>※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p>
	○	비사업자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li> </ul>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li> </ul> <p>※ 아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p>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 비치)</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li> </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li> <li>- 제출처 : 원종공항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li> </ul> </li> </ul> <p>※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p>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등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p>※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input type="radio"/>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명 또는 날인</li> </ul>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li> <li>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li> </ul> </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ul>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허가건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li> </ul> </li> </ul>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를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li> </ul>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li> <li>ⓑ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li> </ul> <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p> <p>※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p> <p>※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해당직장/세무서</li> </ul>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ul> <p>※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해당직장</li> </ul>
	전년도 전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해당직장</li> </ul>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전년도 소득금액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소득금액증명</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세무서</li> </ul>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공단/세무서</li> <li>ⓑ 세무서</li> </ul>
	법인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li> <li>ⓑ 전년도 재무제표</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세무서</li>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li> <li>ⓒ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 해당직장</li> </ul>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ul>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년도</b>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li> <li>ⓑ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ul> <p>※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p> <p>※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세무서</li> <li>ⓑ 해당직장</li> </ul>
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자 확인각서</li> <li>ⓑ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확인)</li> </ul> <p>※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li> <li>ⓑ 세무서</li> </ul>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재직증명서	④ 건강보험공단 ⑤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④ 건강보험공단 ⑤ 해당직장/세무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④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해당년도 포함) 제출 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⑦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⑤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④, ⑤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⑥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⑧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⑨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⑩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⑦ 행정복지센터 ⑧ 행정복지센터 ⑨ 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⑪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⑫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⑩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⑪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서 통 류	<input type="radio"/>		신분증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제외),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등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li> <li>제출처 : 원종공항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군복무 기간 명시)</li> </ul>	
	<input type="radi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해 외  근 무 자 (단신부임)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해외 체류기간 판단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시 단신부임 인정,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인정 불가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li> </ul>
	<input type="radi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li> </ul>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b></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비속	<p>『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p>『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용도 :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원종공항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등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radi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 피해자 제출서류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input type="radio"/>			• 무허가건물인 경우 -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	
	<input type="radio"/>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를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input type="radi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li> <li>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li> <li>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li> <li>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li> <li>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li> <li>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li>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li> <li>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 </ul>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신청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2.15.(월)~12.17.(수) 3일간, (10:00~16:00)	엘리프 원종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	032-677-7775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검수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검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li> </ul>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li> </ul>
	<input type="radio"/>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li> </ul>
	<input type="radio"/>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비치] 아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li> </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li> <l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ul>
		<input type="radio"/>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ul>
		<input type="radi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li> </ul>
	<input type="radio"/>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본인)의 인감도장 날인</li> </ul>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li> <li>•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li> </ul>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 고
아파트 분양금액	우리은행	1005-104-600470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외2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자 명단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변경,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참고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ol></li><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ol></li></ol>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59C	12,000,000	1,200,000	10,800,000
59C1	13,964,000	1,396,400	12,567,600
59C3	14,428,000	1,442,800	12,985,200
72B	12,356,000	1,235,600	11,120,400
74B1	15,247,000	1,524,700	13,722,3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은행	301-0376-2083-71	계룡건설산업(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등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주택형)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제조사명)
59C	2개소	거실 + 안방	4,460,000	LG전자
	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760,000	
59C1	2개소	거실 + 안방	4,530,000	LG전자
	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760,000	
59C3	2개소	거실 + 안방	4,550,000	LG전자
	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780,000	
72B	2개소	거실 + 안방	4,650,000	LG전자
	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260,000	
74B1	2개소	거실 + 안방	4,490,000	LG전자
	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16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은 에어컨 설치금액에서 미옵션시 적용되는 매립배관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2) 타입별 추가선택사항 옵션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아이템	주택형	판매가	유상옵션	제조사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비고
현관	종문(수동)	59C	1,330,000	스윙도어(양개 여닫이, 수동)-화이트베이지/브론즈그레이	-	프레임/유리색상 2가지 중 택1
		59C1	1,210,000	3연동 슬라이딩 (수동)-화이트베이지/브론즈그레이		
		59C3	1,090,000	3연동 슬라이딩 (수동)-화이트베이지/브론즈그레이		
		72B	1,300,000	스wing도어(양개 여닫이, 수동)-화이트베이지/브론즈그레이		
		74B1	1,230,000	3연동 슬라이딩 (수동)-화이트베이지/브론즈그레이		
거실	벽 스타일업 (아트월/시트판넬)	59C	6,10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복도 시트판넬	-	거실 아트월타일 600*600, 복도 도배
		59C1	5,96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복도 시트판넬	-	거실 아트월타일 600*600, 복도 도배
		59C3	6,06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복도 시트판넬	-	거실 아트월타일 600*600, 복도 도배

		72B	7,40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복도 시트판넬	-	거실 아트월타일 600*600, 복도 도배	-	
		74B1	6,96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복도 시트판넬	-	거실 아트월타일 600*600, 복도 도배	-	
	거실 조명 스타일업	59C	2,120,000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		우물천정+기본 거실등		
		59C1	2,040,000					
		59C3	2,120,000					
		72B	2,050,000					
		74B1	2,050,000					
	바닥 스타일업 (바닥타일+일반강마루)	59C	1,820,000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 일반강마루(침실)		전실 일반강마루		
		59C1	1,870,000					
		59C3	1,930,000					
		72B	2,100,000					
		74B1	2,23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59C	4,97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상판콘센트 + 밥통장 + 인덕션(쿠첸))		MMA상판/타일 벽 + 일반 주방가구 + 일반수전 + 일반싱크볼 + 주방 천장일반조명 + 가스쿡탑		
			5,81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상판콘센트 + 밥통장 + 인덕션(LG))				
		59C1	5,36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밥통장) + 인덕션(ку첸))		MMA상판/타일 벽 + 일반 주방가구 + 일반수전 + 일반싱크볼 + 주방 천장일반조명 + 가스쿡탑		
			6,20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밥통장) + 인덕션(LG))				
		59C3	5,67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밥통장) + 인덕션(кучен))		MMA상판/타일 벽 + 일반 주방가구 + 일반수전 + 일반싱크볼 + 주방 천장일반조명 + 가스쿡탑		
			6,51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밥통장) + 인덕션(LG))				
		72B	4,96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상판콘센트 + 인덕션(кучен))		MMA상판/타일 벽 + 일반 주방가구 + 일반수전 + 일반싱크볼 + 주방 천장일반조명 + 가스쿡탑		
			5,80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상판콘센트 + 인덕션(LG))				
		74B1	7,40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밥		MMA상판/타일 벽 + 일반 주방가구 + 일반수전 + 일반싱크볼 + 주방 천장일반조명 + 가스쿡탑		

				통장) + 팬트리+ 인덕션(ку첸)			
			8,240,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수입수전 + 사각싱크볼 + 고급악세사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주방 천장라인조명 + 아일랜드(상판콘센트 + 밥통장) + 팬트리+ 인덕션(LG)			
	냉장고/김치냉장고 +수납가구	59C	6,800,000	수납가구(냉장고 상부장+키큰장) +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BC1L4AA,BC1F4AA,BC1K4AA)	LG전자	기본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연결부속 포함
		59C1	6,800,000				
		59C3	6,800,000				
		72B	6,800,000				
	주방 팬트리 (수납강화)	72B	1,630,000	주방 팬트리 (시스템가구+가구도어)	-	-	-
침실	안방 드레스룸+파우더장 (수납강화)	59C	2,900,000	파우더형 드레스룸(파우더장/터치형거울+엔지니어드스톤 상판_중급+가구도어+포스트형 시스템가구)			
		59C1	3,420,000	파우더형 드레스룸(파우더장/터치형거울+엔지니어드스톤 상판_중급+가구도어+포스트형 시스템가구)			
		59C3	3,420,000	파우더형 드레스룸(파우더장/터치형거울+엔지니어드스톤 상판_중급+가구도어+포스트형 시스템가구)			
		72B	3,070,000	파우더형 드레스룸(파우더장/터치형거울+엔지니어드스톤 상판_중급+가구도어+포스트형 시스템가구)			
		74B1	3,180,000	파우더형 드레스룸(파우더장/터치형거울+엔지니어드스톤 상판_중급+가구도어+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안방 불박이장 (수납강화)	59C	2,750,000	안방 대형 불박이장			
		59C1	2,830,000	안방 대형 불박이장			
		59C3	2,740,000	안방 대형 불박이장			
		72B	2,990,000	안방 대형 불박이장			
		74B1	2,970,000	안방 대형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수납강화)	59C	1,420,000	침실2 불박이장			
		59C1	1,320,000	침실2 불박이장			
		59C3	1,470,000	침실2 불박이장			
		72B	1,630,000	침실2 불박이장			
		74B1	1,630,000	침실2 불박이장			
욕실	욕실 스타일업 (공용/부부)	59C	3,88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공용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 + 젠다이(MMA)	
			3,03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부부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샤워부스 + 젠다이(MMA)	
		59C1	3,88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공용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 + 젠다이(MMA)	
			3,02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부부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샤워부스 + 젠다이(MMA)	
		59C3	3,88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공용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	

					+ 젠다이(MMA)	
			3,02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부부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 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샤워부스 + 젠다이(MMA)
		72B	3,88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유효 측면타일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공용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 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 + 젠다이(MMA)
			3,01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부부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 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샤워부스 + 젠다이(MMA)
		74B1	3,90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유효 측면타일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공용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 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 + 젠다이(MMA)
			3,020,000	수입 벽/바닥타일 + 수입 수전/세면대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 젠다이(엔지니어드스톤)	-	부부 : 일반 벽(600*300)/바닥타일 + 일반수전/세면대+ 일반양변기 + 일반액세서리+샤워부스 + 젠다이(MMA)
가전	인덕션 (3구)	전타입	760,000	일반형_쿠첸(CIR-BB300TOB2)	쿠첸	가스쿡탑(3구)
			1,630,000	고급형_LG(BEI3ASB4BIE)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1,480,000	LG(DIE6PT)(가구판넬 마감형)	LG	-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전타입	1,250,000	TAC521	경동 나비액	전열교환기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	580,000	힘펠(휴젠팩 3)	힘펠	-
		부부	580,000	힘펠(휴젠팩 3)		-
	음식물처리기	전타입	1,540,000		보강 에스티	-
기타	열차단필름	59C	290,000	전동빨래건조대 INUS-ED700	씨넷	-
		59C1	290,000	전동빨래건조대 INUS-ED700		
		59C3	290,000	전동빨래건조대 INUS-ED700		
		72B	290,000	전동빨래건조대 INUS-ED700		
		74B1	290,000	전동빨래건조대 INUS-ED700		
	미세먼지 안전복합장	59C	2,72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	후퍼옵틱	-
		59C1	2,91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 다용도실		
		59C3	2,91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 다용도실		
		72B	3,270,000	거실, 안방, 침실1 발코니, 침실2, 주방		
		74B1	3,780,000	거실, 안방, 침실1-1, 침실1-2 발코니, 침실2, 주방, 다용도실		
	무기질도료	59C	1,81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미세망)	원가드	-
		59C1	2,01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미세망), 다용도실		
		59C3	2,01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미세망), 다용도실		
		72B	1,960,000	거실, 안방, 침실1 발코니, 침실2, 주방(미세망)		
		74B1	2,370,000	거실, 안방, 침실1-1, 침실1-2 발코니, 침실2, 주방(미세망), 다용도실		
	SEF	59C	3,010,000	안방, 파우더룸, 침실1, 침실2 벽체	SEF	-
		59C1	3,150,000	안방, 파우더룸, 침실1, 침실2 벽체		
		59C3	3,120,000	안방, 파우더룸, 침실1, 침실2 벽체		
		72B	3,550,000	안방, 파우더룸, 침실1, 침실2 벽체		
		74B1	3,570,000	안방, 파우더룸, 침실1, 침실2 벽체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기본 냉장고장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상부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용량에 따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 및 마감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 품목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납부시기	계약 시		입주 시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농협은행	301-0376-2083-71	계룡건설산업(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6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6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11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 입주 예정일 : 2028년 01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키즈카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도서 기준이며,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 m (단, 주차공간은 2.1 m 이상)	2.7 m
지하 2층	2.3 m (단, 주차공간은 2.1 m 이상)	2.3 m

### ■ 내진 설계

구분	내진능력
메르칼리 등급	VII 0.204g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 (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 명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 주 : 오정동 13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주 공 (예정) 일 : 2026.11.04.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3번지 외 23필지 면적 : 24,701.4578m<sup>2</sup> (평가 면적: 24,475.4753m<sup>2</sup>) 건축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시령건축사무소</p> <p><b>인증 개요</b></p> <p>인증 번호 : G-SEED-P-2024-1127-5 인증 기관 : 한국 부동산 원 유료 기간 : 2024.12.12.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양선날 <b>인증 등급</b></p> <p>인증 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도급 품부기사 제 2023-329호, 흥정부고시 제 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을 인증되었기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b>(별이달 표기)</b></p> <p>호재이용 및 교통 : 46% 에너지 및 환경오염 : 46% 재료 및 자원 : 45% 물순환 : 70% 유자관리 : 76% 생태환경 : 7% 실내환경 : 60%</p> <p>0% 20% 40% 60% 80% 100%</p> <p><b>종합등급 ★★★★</b></p> <p>2024년 12월 12일</p> <p><b>한국 부동산 원장</b></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b>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b></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b>건축물 개요</b></p> <p>건축물명 : 부천시 오정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연도 : 2024.11.04.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3-23 일지 층 수 : 지하2층 / 지상15층 면적률 : 24701(4578m<sup>2</sup>)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시령건축사무소</p> <p><b>인증개요</b></p> <p>인증번호 : 24-주-예-1-0056 설계기자 : 김호민 인증기관 : 한국녹색기술인증 승인기관 : 한국환경인증원 승인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감사 유효일 인증등급 : 1등급</p> <p><b>인증등급</b></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결과</b></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sup>2</sup>/년)</th> <th>인증등급</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sup>2</sup>/년)</th> <th>인증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 <th>인증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저소비형 건축설계</td> <td>94.7</td> <td>에너지저소비형</td> <td>1</td> <td>CO<sub>2</sub> 배출 저감</td> <td>32.0</td> </tr> <tr> <td>에너지저소비형</td> <td>0</td> <td>에너지저소비형</td> <td>1</td> <td>CO<sub>2</sub> 배출 저감</td> <td>32.0</td> </tr> </tbody> </table> <p><b>에너지 등별 평가 결과</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 </tr> </thead> <tbody> <tr> <td>남부</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남부</td> <td>43.9</td> <td>91.0</td> <td>70.6</td> <td>19.0</td> </tr> <tr> <td>금동</td> <td>30.7</td> <td>35.6</td> <td>26.5</td> <td>7.3</td> </tr> <tr> <td>조영</td> <td>10.2</td> <td>9.7</td> <td>26.6</td> <td>4.5</td> </tr> <tr> <td>현기</td> <td>2.5</td> <td>6.0</td> <td>1.2</td> <td>0.2</td> </tr> <tr> <td>평균</td> <td>84.7</td> <td>139.0</td> <td>130.6</td> <td>32.0</td> </tr> </tbody> </table> <p><b>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은 건축물을 낭비, 낭방, 조명, 부동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입니다.</li> <li>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은 건축물을 낭비, 낭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입니다.</li> <li>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은 에너지 소요량에서 건축물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으로부터 계산됩니다.</li> </ul> <p>* 이 건물은 낭방과 바이어스를 갖지 않습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면면적당 에너지지출량은 유통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을 인증되었기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4년 12월 05일</p> <p><b>한국녹색기술인증원</b></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면면적당 에너지지출량은 유통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을 인증되었기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인증등급	에너지저소비형 건축설계	94.7	에너지저소비형	1	CO <sub>2</sub> 배출 저감	32.0	에너지저소비형	0	에너지저소비형	1	CO <sub>2</sub> 배출 저감	32.0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남부	0.0	0.0	0.0	0.0	남부	43.9	91.0	70.6	19.0	금동	30.7	35.6	26.5	7.3	조영	10.2	9.7	26.6	4.5	현기	2.5	6.0	1.2	0.2	평균	84.7	139.0	130.6	32.0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인증등급																																																	
에너지저소비형 건축설계	94.7	에너지저소비형	1	CO <sub>2</sub> 배출 저감	32.0																																																	
에너지저소비형	0	에너지저소비형	1	CO <sub>2</sub> 배출 저감	32.0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지출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남부	0.0	0.0	0.0	0.0																																																		
남부	43.9	91.0	70.6	19.0																																																		
금동	30.7	35.6	26.5	7.3																																																		
조영	10.2	9.7	26.6	4.5																																																		
현기	2.5	6.0	1.2	0.2																																																		
평균	84.7	139.0	130.6	32.0																																																		

구분	건축 감리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예닮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화에프이씨
감리금액	1,281,470,690원	216,810,000원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원종공항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계룡건설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21171-0007497	160111-000312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101번길 38, 4층 405호(원종동, 금홍씨비엠상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 ■ 보증관련 유의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원	보증기간
제 06712025-101-0000600 호	₩35,293,7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같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 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체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새시,マイ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12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li><li>- 당 사업은 <b>2023년 04월 11일</b>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li><li>- 당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단지내 조합분양 및 일반분양이 혼합 배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li><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li><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li>- 계약체결 이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li>-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li><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li><li>-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ul>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패턴 등),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주변환경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는 **오정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외국인(법인 · 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 1~8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입주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경우 추후 건조기 설치 시 2단 선반 사용으로 인한 수전 높이, 가스계량기 등 간접에 이동 설치가 불가하여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손빨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 및 세대내 환기배관으로 인해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또는 침실3에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되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일부 공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샤워부스, 위생기구,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 및 설치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홈넷 월패드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홍보판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단지 내 조경계획(식재, 시설, 포장패턴 등),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 각 등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CG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CG,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C3, 74B1타입이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 바라며, 청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돋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벽, 거실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 본 공사시 타일, 앤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앤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앤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흠넷 월패드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을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되며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견본주택을 촬영 또는 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설계 변경이 예정된 사항의 경우 분양시 견본주택에 별도로 안내 및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확인하여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li> <li>- 내화성능시험에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 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li> <li>-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인접세대의 단열을 위한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カリ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li> <li>-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액정TV(확장시 설치)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li> <li>-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최상층을 제외한 천장에 설치됩니다.</li> <li>-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필터교환 등 유지보수를 위해 천장마감이 없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전열교환기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으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을"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현관바닥,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아트월 등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타일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패턴·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옥상의 형태 및 각 동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표현되는 줄눈과 지붕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처리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환기 디퓨저, 환기배관,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실외기실에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이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응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시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지하 1~2층 / 지상 14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동 지상1층에 관리실, 1동~4동~7동 사이에 지상1층에 균린생활시설, 2동 배면에 주민운동시설, 5동,6동,8동 사이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 2동 배면 지하2층에 경로당, 지하1,2층에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2동과 5동 동측도로 쪽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수거차량 배기 및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li> </ul>

	<p>있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옥탑장식물은 추후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외부 엘리프트 브랜드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는 4동과 일부 수직으로 연결되고 1동과 7동 사이에 3층에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a href="#">4동 302호</a>는 근린생활시설 지붕의 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영역에 대해서는 4동 302호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석재 및 시설물의 경우 현장 여건 및 소방협의(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규모 및 구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흥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도면 기준 등등 이상 수준)</li> <li>- 조경시설물 (운동, 휴게, 놀이시설물 일체)에 대한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수량 추가 등의 요청은 하실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단지 녹지, 조경 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패턴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을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조경 석재 및 조경시설물, 급배기시설(환기구등), 천창,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제한, 냄새 및 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됩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지하1층 유효통과높이 : 2.3m, 지하2층 유효높이: 2.3m)</li> <li>-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li>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웨이터 허브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행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지하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주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 및 지상에 계획된 DA(지하 환기구)로 인하여 일부세대 시야 가림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문주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화장실 벽, 다용도실 벽 등 일부 벽체를 제외하고는 건식벽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 사이의 경량벽체 칸막이는 그拉斯울이 시공될 예정입니다.</li> </ul>
단위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li> <li>-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모든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 /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li> <li>-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작업 난간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PD, AV, EPS, TPS, PIT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li> <li>- 아파트 외관 입면 디자인에 따라 저층부 코어 등 일부마감은 도장으로 시공됩니다.</li> <li>- 지상층에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시야 가림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빌전기실, 제연헬름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실, 헬름, 전기실, 빌전기실, 제연헬름, 우수조, 정화조 등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집광판, 파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엘리프원종.com>

■ 분양문의 : ☎ 032-677-7775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